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002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김 현 · 권향엽 · 최민희  
이주희 · 윤준병 · 김 윤  
이광희 · 임오경 · 정동영  
박지원 · 이정현 · 이수진  
한민수 · 차지호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수집·활용 및 관련 시책 등을 규정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가 개별 기관 내부에 분산 보관되거나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에 대한 현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정부사업 수행기관 등이 산출한 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토록 하는 법적 의무나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데이터 공급 체계의 효율성이 낮은 상황임.

이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화하고 국가기관등의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협력 요청 및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체계적 공급과 활용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등).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 등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의 범위 및 절차와 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 략)</p> <p>④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u></p> <p>⑤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u></p> <p>⑥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15조(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관련 시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p><u>&lt;삭 제&gt;</u></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15조의2(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습용데이터 구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학습용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통합제공시스템”이라 한다)을</u></p>

구축·관리하고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의 통합제공시스템에 연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 등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기관등 또는 국가기관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연계,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된 학습

용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제공시스템을 이용하는 자  
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할 수 있  
다.

⑦ 그 밖에 통합제공시스템의  
구축·관리, 제2항에 따른 연계,  
제공의 범위 및 절차와 방법, 제  
6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